

서울특별시 성북구 통·반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(이일준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일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4월 1일

발의자 : 강수진, 경수현, 고영옥, 김육영,
박영섭, 소형준, 양순임, 이용진,
이인순, 이일준, 이호건, 임태근,
정기혁, 정병기, 정해숙, 진선아

1. 제안이유

성북구 통·반장회의 회의록 작성·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성북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동장의 통장회의 등 회의록 작성·관리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제2항)
- 나. 한글맞춤법 및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(안 제2조제1항, 제7조제1항, 제8조제1항 및 제3항, 제10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부서협의 : 자치행정과

다. 입법예고 : 2024. 4. 4. ~ 2024. 4. 8.

서울특별시 성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관할아래”를 “관할 아래”로, “관할하”를 “관할 아래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중 “요망사항”을 “건의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주민지도 (전시에 한함)”를 “주민지도(전시에 한함)”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“배급 (전시에 한함)”을 “배급(전시에 한함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2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반내”를 “반 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월 1회로 하고”를 “월 1회로 하고”로 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동장은 통장회의 또는 통·반장 연석회의의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구청장은 통·반장에게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동의 공적장부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통·반의 조직) ① 동의 <u>관할</u> 아래 통을 두고 통의 <u>관할하</u> 에 반을 둔다. ②·③ (생략)	제2조(통·반의 조직) ① -- <u>관할</u> 아래 ----- <u>관할</u> 아래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임무) ① 통·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. 1. (생략) 2.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, <u>요망사항</u> 의 보고 3. ~ 6. (생략) 7. 전시 홍보 및 <u>주민지도</u> (<u>전시</u> 에 <u>한함</u>) 8.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<u>배급</u> (<u>전시</u> 에 <u>한함</u>) 9. (생략) 10. ~ 12. (생략)	제7조(임무) ①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 <u>건의사항</u> ----- 3. ~ 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 <u>주민지도</u> (<u>전시</u> 에 <u>한함</u>) 8. ----- -- <u>배급</u> (<u>전시</u> 에 <u>한함</u>) 12. (현행 제9호와 같음) 9. ~ 11. (현행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반상회) ① 반상회는 <u>반내</u> 에 거주하는 가구원으로 구성한다. ② (생략) ③ 정기반상회는 <u>월 1회</u> 로 하고	제8조(반상회) ① ----- <u>반내</u> ----- 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월 1회</u> 로 하고

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 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 다. 제9조(통·반장회의) (생략) <u><신설></u> 제10조(편의제공 등) ① 통·반장 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 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 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. ② ~ ④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. 제9조(통·반장회의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동장은 통장회의 또는 통· 반장 연석회의의 회의록을 작성 · 관리하여야 한다. 제10조(편의제공 등) ① 구청장은 통·반장에게 제7조의 임무수 행에 필요한 경우 동의 공적장 부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	---